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프랑스의 노동생활

Frédéric Turlan (IR Share 소장 겸 유로파운드(Eurofound) 프랑스 통신원)

■ 도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징지어진 2020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2019년보다 약 6만 명 증가했다. 2020년 3월과 4월 사이에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만 7천 명(27%)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률이 주요 원인이었다. 2차 대유행이 발생한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망자 수는 3만 3천 명(전년동기대비 16% 증가)을 기록했다. 초과사망률은 2018년 또는 2019년보다 9% 상승했다.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대부분을 시행했다. 대유행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병원의 수용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봉쇄를 결정했으며,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행정입법명령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시민들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봉쇄조치(3월

* 이 글은 Eurofound(2021)의 *Working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2020*의 국별 보고서 “France: Working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2020”을 요약·발췌한 것이다(<https://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other/2021/working-life-in-the-covid-19-pandemic-2020#tab-03>).

17일~5월 10일, 10월 30일~12월 5일)의 결과로 2020년 GDP는 8.3% 감소했으며, 전체 민간부문 기업에서 사무직 노동자 수는 1.8% 감소했다(36만 500개의 일자리 감소). 2020년 4분기 구직자 수는 381만 6,700명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7.5% 상승했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어 코로나19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였으며, 정부가 마련한 조치들이 경제를 지탱했다.

■ 코로나19 대유행이 노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 상황에 미친 영향과 노동시장 및 생활여건에 끼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통계와 연구가 활용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이용 가능한 다수의 연구에 기반하여 1차 봉쇄라는 특정 기간 동안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을 검토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고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INSEE, 2020a). 이 보고서는 보건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로 인해 부각되거나 심지어 악화된 사회적·지역적·성적 불평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적 불평등

코로나19와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에서 출생한 이주민의 사망률 급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파리 외곽의 센생드니 구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관측되었다. 이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이성의 원인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센생드니 구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며 과밀주거지가 무수히 많다. (센생드니 구가 위치한 파리와 수도권 지역의 다른 구는 과밀주거지가 8~16% 수준이지만 센생드니 구는 21%에 이른다.) 또한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이 지역의 노동인구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Allard et al., 2020). 또한 센생드니 구는 취약한 건강상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크다.

사회적 불평등

특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 등 특정 직종 종사자가 감염에 더 취약하며, 좀 더 일반적으로는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직종 종사자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통근 수단도 감염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봉쇄기간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해야 하는 대면근무는 관리직보다 생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 사이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관리직의 경우 대다수가 재택근무를 했다.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초 두 집단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는 이들의 비중은 각각 42%와 43%에 달했다. 더욱이 고용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도 이들은 거의 항상 감염에 대한 노출이 더 높은 현장근무를 했다. 봉쇄조치 실시 2개월 후에도 고용상태를 유지한 사무직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 중 현장근무 비율은 각각 73%와 97%였다. 반면 전문직과 관리직의 경우 여타 사회적 범주에 비해 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1차 봉쇄조치 7주차에 고용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86%에 이르렀으며, 이 중 2/3가 재택근무를 했다(INED, 2020).

재택근무와 통근

프랑스 노동부 산하 조사연구통계지원국(DARES, 2020)은 2020년 4월 이후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보건 위기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택근무 또는 현장근무를 하거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에 관한 자료를 기업별로 수집할 수 있다. 4월과 5월의 1차 봉쇄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율이 10%가 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은 80%에 이르렀다. 또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은 15%에 달했다. 1차 봉쇄 이후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7월과 8월에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이 50%에 근접했다. 12월에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비율이 80%가 넘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이 (1차 봉쇄기간보다 4%p가 더 낮은) 11%로 나타났으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도 1/3에 달하였다(2020년 4월 대비 13%p 증가).

1차 봉쇄기간 동안 재택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가내노동 비율은 상당히 증가했다. 조사 주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을 한 이들 중 47%는 이전 4주 동안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9년 수치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INSEE, 2020b).

노동시간 단축제도

조사연구통계지원국(DARES, 2020a)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이 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인력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참여하는 사무직 노동자 수는 2020년 4월에 8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8월에 120만 명으로 감소한 후 11월에 310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¹⁾

일-가정 양립

프랑스 통계청 자료(INSEE, 2020a)에 따르면 1차 봉쇄기간 중 여성은 가사 및 육아 업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 담당했으며, 심지어 집 밖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그러했다. 20~60세의 여성과 남성 중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가사노동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9%와 9%로 조사되었다. 육아에 할애한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3%, 남성이 30%로 나타났다. 봉쇄조치로 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노동자의 사회적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다. 3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노동시간이 전년동기대비 평균 60% 감소한 반면, 양부모 가정의 경우 38% 감소했다(INSEE, 2020a). 월간 가구조사(Camme survey)에 따르면, 고용 상태를 유지한 여성 중 이중노동 부담에 시달리는 비율은 45%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고 하루 4시간 이상 육아에 할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해당 비율은 29%에 그쳤다(INSEE, 2020a).

1) ASP-DGEFP-Dares, SI APART(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서 2021년 1월 31일자 데이터를 2021년 2월 1일에 추출; Acemo-Covid-19 설문조사(enquête mensuelle flash Activité et conditions d'emploi de la main d'oeuvre).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의 대응

보건 위기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적어도 공식적인 방식으로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대부분을 시행했다. 단, 몇몇 기구와 비공식 협의는 진행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병원의 수용력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다수 채택되었다. 주요 조치 중 하나로 기존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사무직 노동자가 받는 보상은 적어도 직전 총보수의 70%, 즉 순급여의 84%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순급여의 100%까지 보전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새로운 범주의 수혜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 실업자, 계절노동자, 문화부문 종사자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식당, 라이브 공연, 출장요리, 스키장 등 영업활동이 중단된 산업부문을 위해 사업체 지원조치를 채택했다.

봉쇄조치 해제 1단계는 2020년 5월 11일에 다수 상점의 영업 재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총리는 5월 28일에 재택근무 유지 지침과 함께 봉쇄조치 해제 2단계의 기간(6월 2일부터 21일까지)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월 14일에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2단계 기간을 조기 종료하고 완전한 봉쇄 해제를 발표했다. 10월 말에 이르러 정부는 2차 봉쇄조치의 시행을 결정하고, '비필수' 상점, 술집, 식당 등의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 1차 봉쇄기간과는 달리 어린이집, 학교, 대학, 고등학교의 등교 방침은 유지되었다. 12월 15일에는 봉쇄령을 해제하면서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 코로나19가 노동생활 관련 정책의 가속화와 중단 및 사회적 대화에 미친 영향

발전이 가속화된 분야

재택근무

코로나19 위기가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1차 봉쇄기간에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기업 경영진에게 입증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경험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적 파트너들은 재택근무에 관한 기존의 범산업적 협약을 검토하고 새로운 협약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기업 수준에서는 재택근무의 활용을 둘러싼 교섭이 비중 있게 진행되거나 사용자가 대유행 종식 이후 자사의 재택근무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

코로나19 위기는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가속화했다. 한편으로 디지털화는 재택근무의 증가와 관련된 발전이다.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기업은 메시지 전송이나 원격회의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거나 위기 이전에 이미 구축해 둔 도구의 사용을 확대했다. 다른 한편으로 봉쇄조치와 재택근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기업은 원격 인터뷰로 직원을 선발·채용하고, 전자 서명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서비스를 비물질화²⁾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운영을 재검토해야 했다. 긴급성의 문제로 시행된 이러한 비물질화 방침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논의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1차 봉쇄기간 동안 플랫폼 노동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들에게 최선의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

2) 편집자 주: 여기에서 비물질화는 유형적인 사물(음악, 책 등)이 무형적인 형태로 디지털화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으며, 특히 우버 운전기사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의 자영업자로서의 지위는 허구이며, 우버는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성과를 감독하며, 제재권을 행사하였다.”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2021년 1월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대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색하는 임무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21년 4월에 행정입법명령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플랫폼을 상대로 노동조건을 교섭할 목적으로 운전기사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사업장 선거가 2022년에 조직된다.

발전이 중단된 분야

2020년에 정부는 실업보험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행령들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대중적 지지도가 낮았던 이 개혁안은 2019년에 의회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12월 이후 노조에 의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던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정부의 개혁 시도는 중단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6일에 연금개혁을 비롯하여 진행 중인 모든 개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4월에 노동부는 실업보상 규정 일부를 완화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노조도 못 했던 일을 코로나가 해냈다고 보도했다(Le Monde, 2020a). 정부부처는 양대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보건 및 경제위기와 2022년 5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개혁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중적 지지도가 낮은 개혁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미친 영향

노동부 통계(Ministère du Travail, DGT, 2020a)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기업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이 체결한 협약 건수가 급증하였다(8만 780건의 협약 체결, 2018년 대비 30% 증가). 2020년 3월 이후 보건 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3건의 업종별 협약과 8천 건 이

상의 기업협약이 체결되었다(DGT, 2020b). 특히 2020년 3월 25일에 제정된 행정입법명령 2020-323호³⁾에 의해 구축된 메커니즘을 통해 단체교섭은 위기 대응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행정입법명령은 단체협약이 사전에 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제도⁴⁾를 도입할 권한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를 부과하거나 노동시간 단축 일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적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단체협약이 원격으로 교섭되고 서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채택했다.⁵⁾ 임시로 채택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종업원위원회 회의와 단체교섭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21년까지 연장되었다.

사용자단체와 노조 양측은 특정 조치에 대한 이견과 산하 조직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2020년에 대표적인 사회적 파트너들은 직종 간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에서 공공병원의 고용 및 노동조건, 재택근무(아래 내용 참조), 산업보건에 관한 3건의 범산업적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 위기는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교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Le Monde, 2021).

■ 대유행으로 인한 노동시간 규정의 발전

2020년에 노동시간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기업 수준에서 체결된 협약과 업종 수준에서 체결된 협약 중 다수가 노동시간 관련 조치를 포함했다. 기업 수준에서 체결된

3) Ordinance No. 2020-323 of 25 March 2020.

4) Eurofound(2020a), “Long-term Short-working Scheme”, Case FR-2020-27/10230 (Measures in France),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5).

5) Eurofound(2020b), “Adapt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Rules”, Case FR-2020-13/1028 (Measures in France),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5).

협약의 다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연대 조치의 도입을 통해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0년 11월 26일에 사회적 파트너들은 재택근무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⁶⁾ 이 협약은 기존의 법체계를 보완하고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기술하고 있지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협약 당사자들에 따르면, 이 협약은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도구이며 업종과 기업의 교섭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사무직 노동자와 협력하여 기업 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규정에 따라 사무직 노동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 보건 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재택근무 활용 빈도는 사용자와 사무직 노동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전일 재택근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시간과 현장근무 시간 간에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논평 및 전망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련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을 전면에서 지휘한 마크롱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전통으로 회귀하여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quoi qu’il en coûte)”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개념은 공공재정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파트너들은 2008년 경제 및 금융위기 당시 개입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정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대대적인 시행, 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대체로 환영했다.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는 연금개혁과 2019년에 결정된 실업보험 개혁 등 진행 중인 개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실업보험 개혁이 시행되었다면 더 많은 실업자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6) 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u 26 novembre 2020 pour une mise en œuvre réussie du télétravail.

사회적 파트너들은 2020년 전반에 걸쳐 대단한 활력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이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개발하는 데 점차 관여를 확대해 왔다.

사회적 파트너들은 2020년에 체결한 3건의 범산업적 단체협약(위 내용 참조) 외에도, 정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보건지침의 변화에 작업조직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기업 수준에서도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코로나 효과로 모든 사회·경제적 사안을 논의하는 공간인 종업원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평소보다 더 활기를 띠게 되면서 경영진과 선출된 직원 대표 간의 관계도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은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핵심 행위자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20년 10월 14일에 5개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최고위급 간부들은 총리에게 보내는 공동 서한을 통해 정부부처들이 사회적 대화에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하며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6월 22일에는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을 포함한 5개의 대표적인 노동조합과 3개의 사용자단체가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동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례 없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은 사용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합법적인 대표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프랑스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위기를 피해감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을 표명했다(Le Monde, 2020b).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 고위급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KLI**

참고문헌

- Allard T., Bayardin V., Mosny E.(2020), “L’Île-de-France, région la plus touchée par le surcroît de mortalité pendant le confinement”, INSEE Analyses Île-de-France, n° 118, June, <https://www.insee.fr> (검색일 : 2021.2.15).
- DARES(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et des statistiques) (2020), “Activité et conditions d’emploi de la main d’œuvre pendant la crise sanitaire Covid-19”, Synthèse des résultats de l’enquête flash, June,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검색일 : 2021.2.15).
- Eurofound(2020a), “Long-term Short-working Scheme”, Case FR-2020-27/10230 (Measures in France),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5).
- _____(2020b), “Adapt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Rules”, Case FR-2020-13/1028 (Measures in France),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5).
- INED(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2020) Lambert A., Cayouette-Remblière J., Guéraud E., Bonvalet C., Girard V., Le Roux G., Langlois L., “Le travail et ses aménagements : ce que la pandémie de Covid-19 a changé pour les Français”, Population & Sociétés, n° 579, INED, July, <https://www.cairn.info> (검색일 : 2021.2.15).
-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2020a), “Les inégalités sociales à l’épreuve de la crise sanitaire : un bilan du premier confinement”, Insee Références, édition 2020 - Vue d’ensemble, December 3, <https://www.insee.fr> (검색일 : 2021.2.15).
- _____(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2020b), Jauneau Y., Vidalenc J., “Durée travaillée et travail à domicile pendant le confinement : des différences marquées selon les professions”, INSEE Focus, n° 207, October.
- Le Monde(2020a), “La réforme des retraites victime du coronavirus”, April 17.
- _____(2020b), “Les acteurs sociaux revendiquent toute leur place dans la sortie de crise”, July 13.
- _____(2021), “Hôpital, télétravail, santé au travail… comment l’épidémie de Covid-19 a ranimé le dialogue social”, January 15.
- Ministère du Travail, DGT(2020a), “Bilan 2019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 très forte augmentation des accords d’entreprise notamment au sein des plus petites”, Press Release, October 12, <https://travail-emploi.gouv.fr> (검색일 : 2021.2.15).

· _____ (2020b), “Bilan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2019”, https://travail-emploi.gouv.fr/IMG/pdf/bnc2019_4_pages.pdf (검색일: 2021.2.15).

* Eurofound의 COVID-19 EU PolicyWatch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사례는 <https://www.eurofound.europa.eu/data/covid-19-eu-policywatch>에서 찾아볼 수 있다.